

식품의약품안전처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「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」일부개정고시 알림

- 1. 의약외품 용기·포장 등에 점자 등 표시와 관련하여 표시 대상 의약외품, 기재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」(식약처고시)을 붙임과 같이 개정·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2. 아울러 동 개정 고시는 우리 처 누리집(www.mfds.go.kr → 법령/자료 → 법령정보 → 제개정고시등)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, 관련 단체(협회)에서는 회원사 및 비회원사에 동 정보를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- 붙임 1. 「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」일부개정고시 1부.
 - 2. 「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」전문 1부. 끝.

식품의약품안전表

수신자 본부(57개 전부서),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(43개 전부서), 6 한국제약바이오협회,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, 한국의약품

8개 산하기관, 지방자치단체, 한화장품협회

의약외품정책 전결 2024. 7. 22. 주무관 사무관 주혜진 최주영 임상우 과장

협조자

시행 의약외품정책과-3510 (2024. 7. 22.)

접수
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/ www.mfds.go.kr

전화번호 043-719-3704 팩스번호 043-719-0000 / 대국민 공개 / joosh9421@korea.kr

힘내라 대한민국!